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이의신청 절차 정비〉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이를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생략)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범위-----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받거나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신 설></u> <u><신 설></u> ⑤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u>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⑩ ----- 제9항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하는 참여제한, 환수조치 및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 제11조의2¹⁾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등이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 또는 중단사업으로 평가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해당
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²⁾에 그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
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⑦ (생략)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① ~ ⑥ (생략)
-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런데,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 36조³⁾에서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14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서,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행정청의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 절차의 법적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⁴⁾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현행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①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동법 제14조⁵⁾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참여제한, 환수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33조⁶⁾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본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생략)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표 2] 이의신청 절차의 법률간 비교

구 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국연법)	행정기본법
		법	시행령		
평가결과	이의신청 청구기간 (연구기관→처기관)	시행령 위임	10일 이내 (제14조의3제7항)	10일 이내 (제14조제6항)	30일 이내 (제36조제1항)
	행정청 처리기간 (처분기관→연구기관)	규정 없음 (국연법 준용)		30일 이내 (제14조제7항)	14일+10일 이내 (제36조제2항)
제재처분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	이의신청 청구기간 (연구기관→처분기관)	시행령 위임	10일 이내 (제14조의3제7항)	20일 이내 (제33조제3항)	30일 이내 (제36조제1항)
	행정청 처리기간 (처분기관→연구기관)	규정 없음 (국연법 준용)		30일 이내 (제33조제5항)	14일+10일 이내 (제36조제2항)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행정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이의신청 청구기간 등의 차이로 인해 관련한 법률 해석에 있어 국민적 혼란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의 통일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도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절차에 맞춰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7)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이 선행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⁸⁾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

8)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정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계류현황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1	2209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복지위
2	22091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복지위
3	22092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교육위
4	22091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농해수위
5	22091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농해수위
6	220916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교육위
7	220917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산자위
8	220916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기재위
9	220917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농해수위
10	220916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농해수위
11	22091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행안위
12	2209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행안위
13	220918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행안위
14	22092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행안위
15	220917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과방위
16	220916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행안위
17	22091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행안위
18	22092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농해수위
19	2209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2025-03-20	기재위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